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10 선고 2019가합501824 판결 [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
소]

전 문

홍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홍성필

可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결 2019. 4. 26.

판결 선고 2019. 5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63,059,677원 및 그 중 145,391,857원에 대하여 2018. 11. 3.부터 2019. 5. 1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63,059,6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조합는 1996. 10. 21. D 주식회사(이하 'D'라 한다)와 사이에 여신한도 5억 원, 여신거래만료일 1999. 10. 21., 이자 연 16.4%, 지연배상금율 연 21%로 하는 어음거래약정(이하 '이 사건 어음거래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D 대표이사 E는 같은 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C조합는 1997. 1. 25.부터 1997. 4. 8.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D에 어음할인 대출을 해주었고, 이후 D로부터 교부받은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, 위 각 약속어음은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었다.

다. C조합의 D 및 E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은 1998. 10. 21.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F에 이전되었고, 2000. 12. 14. 다시 G 유한회사에 이전되었다.

라. G 유한회사는 D와 E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(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01225호),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원고(당시 상호는 '주식회사 H'였다)에게 양도하였다.

마.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승계참가를 하였고, 대구지방법원은 2004. 5. 27. 원고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, 위 판결이 2004. 7. 3. 확정되었다.

바. 원고는 D와 E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D와 E를 상대로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4851호),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4. 7. 2. "D와 E는 연대하여 145,391,85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 한다)을 발령하여, 위 지급명령은 2014. 9. 12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사. 한편, E 소유의 여주시 I 답 498㎡ 및 J 전 397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1 1995. 12. 20. 채권최고액 2억 원, 채무자 D,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(변경 전 상호 : L 주식회사, 이하 'K'라 한다)로 하는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제1근저당권'이라 한다)이 설정되었고, 2 1997. 5. 7. 채권최고액 5억 원, 채무자 D 및 M, 근저당권자 K로 하는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제2근저당권'이라 한다)이 설정되었으며, 3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1997. 5. 6.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에 M를 추가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.

아. 또한 2001. 4. 28.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1. 4. 19. 각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에 피고를 추가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.

자.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, 그 경매절차에서 2017. 10. 25. K에 483,812,406원이 배당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

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145,391,857원의 대출금채권이 존재하는 사실, E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된 2014. 9.경까지 약 15년간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그 이후로도 E가 위 채무를 변제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.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E의 일반재산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.

2) 피대위채권의 존재 및 E의 권리 불행사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그 대표이사 M, D와 함께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의 채무자이고,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E는 민법 제370조, 제341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,

2근저당권자인 K에 배당된 483,812,406원에 상응하는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.

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E는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(피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이다).

3) 소결

결국 원고는 E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E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다만,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법정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,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중복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따라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263,059,677원[= 원금 145,391,857원 +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. 8. 27.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. 9. 11.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7,667,820원(= 145,391,857원 × 20% × 1477일¹⁾ ÷ 365일, 원 미만버림)] 및 그 중 원금 145,391,85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. 11. 3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. 5. 10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K 대구지점 직원이 1997. 5.경 피고 대표이사인 M에게, E가 D의 K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한 재산권포기각서를 제시하면서, D의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으로 정리하고, 피고와 M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대리점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여, 피고가 K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1. 4. 15. 폐업하였고, 그 후

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O이 K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, 다시 K 대구지점 직원이 2003. 10.경 피고에게 피고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경영하게 해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대리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여, 2003. 11. 6.부터 다시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, K가 2016. 6.경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받은 후 2018. 4.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제품 공급을 중단하여 현재 피고가 폐업처리된바, 피고가 E의 이 사건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,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담보를 상실하여 K로부터 물품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, 피고가 E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피고의 위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,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권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써 E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, K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, 위와 같은 약정 등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D와 K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, 2근저당권의 채무자로 추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의 K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,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는 그 채무에 관하여 여전히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,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E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, 그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E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 완, 판사 권순현, 판사 박상훈

1) 원고는 2014. 8. 26.부터 2018. 9. 11.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E에게 송달된 날은 2014. 8. 26.이므로,

자연손해금은 그 다음날인 2014. 8. 27.부터 기산하여야 한다. 결국 2014. 8. 27.부터 2018. 9. 11.까지의 일수는 1477일이다.